

##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

제정 2002. 6. 15 조례 제 401호  
개정 2005. 10. 5 조례 제 741호  
전부개정 2009. 4. 24 조례 제1010호  
일부개정 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  
일부개정 2017. 10. 2 조례 제171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도시개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도시개발구역”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·고시된 구역을 말한다.
  2. “도시개발사업”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·상업·산업·유통·정보통신·생태·문화·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에 의거한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주거·상업·산업·유통·정보통신·생태·문화·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, 집행,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.

### 제2장 도시개발사업 시행

**제4조(공청회 개최방법 등)**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

##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

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해당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, 해당 구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 게시판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한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.

**제5조(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)**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제정한다.

**제6조(과소토지의 기준)** 영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규약,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.

## 제3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

**제7조(특별회계의 설치)**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도시개발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**제8조(특별회계의 재원)**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정부의 보조금
3.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
4.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
5.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된 과태료

6.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
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
8. 「지방세법」 제238조에 따라 부과·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금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
9.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 회수금,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
10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시·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당해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
11. 차입금

제9조(특별회계의 운용·관리)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·관리한다.

-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
  2.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
  3. 시가 시행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
  4.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
  5. 도시개발구역의 지정,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비
  6.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  7. 특별회계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
  8.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
-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
    - 가.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
    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

2.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

가.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

3.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·연구비

4.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

③ 특별회계에서 용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장이 시행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

2.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

가. 도시개발사업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

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공사비

④ 특별회계 재산의 토지 등을 「신탁업법」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.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.

⑤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인 도시개발특별회계 징수관 1인을 두며, 징수관은 시의 도시개발 업무담당 실·국장으로 한다.

⑥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시장은 특별회계 운영계획을 당해 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,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의 운영규모

2. 당해 회계연도 용자계획

3. 기금의 수입, 지출에 관한 사항

#### 4.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

- 제10조(융자조건) ① 융자금의 이율은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.
- ②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,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융자기간은 5년 후 일시 상환으로 하되,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.
- ③ 융자는 시와 시금고가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.
-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연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-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제11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, 부위원장은 도시개발(특별회계)업무담당 실·국장,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담당관·과장, 회계업무담당 담당관·과장, 2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,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. <개정 2017. 10. 2>
-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
2. 제10조제2항의 용도 외 사용여부
3.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- 제12조(실비변상)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

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1>

제13조(준용)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·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제3조(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법률 제6252호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 폐지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날”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.

② 「도시개발법 시행령」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로 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시행 60일 이후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제4조(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(개발행위허가가 의제가 되는 허가·인가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(건축허가가 의제 되는 허가·인가 등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741호>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협의·승인·심의·허가·인가·매수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
부칙 <2009. 4. 24 조례 제101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협의·승인·심의·허가·인가·매수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
부칙 <2012. 12. 11 조례 제1264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를 인용한 조항은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.

별표 생략.

부칙 <2017. 10. 2 조례 제171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㉗ 까지 생략

㉘ 「용인시 도시개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부시장”을 “제2부시장”으로 한다.

㉙ 부터 ㉚ 까지 생략